

「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」 “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” 2·3차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주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통해 영천시 금호읍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「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」의 일환으로,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‘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’의 3차년도 지원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11월

(재)경북테크노파크 원장

사업개요(요약)

- 사업목적 :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
- 지원규모 : 0개사 이내
- 모집기간 : 2025. 11. 17.(월) ~ 2025. 11. 28.(금) 18:00
- 자격요건

구분		지원금액	자격요건	
			대상	세부내용
■ 청년창업	2차년도	최대 30,000천원	2025년 1기 협약 기업	- 2025년 5월 1일(협약일 기준)자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최초 협약을 체결한 창업기업
	3차년도	최대 10,000천원	2024년 1기 협약 기업	- 2024년 5월 1일(협약일 기준)자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최초 협약을 체결한 창업기업

- ※ 타 창업 관련 지원사업(R&D 사업 제외)에 협약 증거거나 체결 예정인 기업은 지원 불가
- ※ 심사 요건(자격 및 점수)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

II

지원유형

□ 지원금 및 지원내용

- 1) 협약기간 : 협약 체결일 ~ 2026. 7. 31.
- 2) 지원내용

구 분		세 부 내 용
지원금		- 시설·장비 운영, 시제품 제작, 홍보·마케팅,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연 계 지 원	맞춤 컨설팅	- 기업의 수요 및 상황에 맞는 전문가 연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
	각종 교육	- 창업기업 및 이전·스케일업 기업이 필요로하는 각종 교육 제공
	이웃사촌마을 연계 지원	-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내 타 사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(예시) '자율형 공동스토어 운영사업' 연계 박람회 지원 등

※ 최초 협약 시작일 이후 영천시 '금호읍' 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이전 및 3년 유지

III

지원대상

□ 청년창업

- 1)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“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”
전년도 수혜기업

※ 선정 후 협약기간 내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적발될 경우,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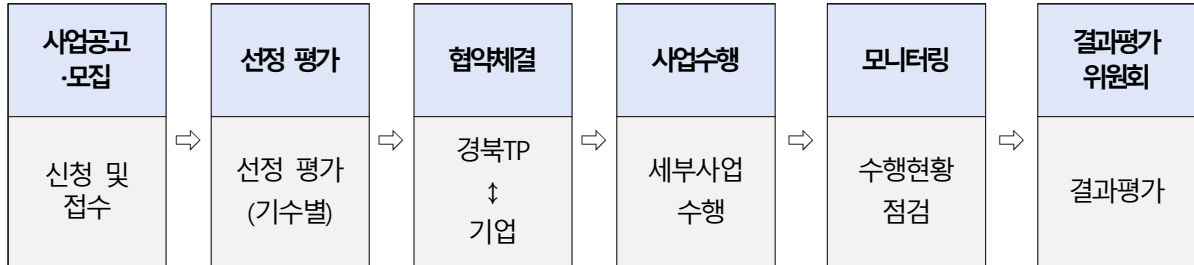
- 2) 청년창업 분야

분 야	대 상 업 종
지식창업	지식 콘텐츠, 마케팅홍보, 디자인, 문화서비스업, 통신판매업, 아이디어 창업 등
6차산업	6차산업 관련 사업 분야와 연계된 서비스업, 제조업, 판매업
일반창업	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, 지역본사 프랜차이즈 창업 등
기술창업	기계, 재료, 전기전자, 화학, 섬유, 식품, 에너지,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등

IV

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

가. 선정평가 및 이후 사업 수행 절차



※ 위 절차의 세부일정은 기수별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
나. (1차) 사전검토

- 1) (사전검토) 既개발 및 既지원 1차년도 연계성 여부
- 2)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
- 3) (실태조사 또는 면담) 신청기업의 신청 자격, 운영체계, 기술성 및 사업성,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또는 면담(유선 등)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반드시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함

다. (2차) 선정평가

- 1) 사전검토(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) 결과,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혹은 대면 평가하며,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선정
- 2)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,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을 진행하며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“탈락”,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 건수만큼 “최종선정” 함
- 3) “최종선정”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진행하며, 1개월 이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(사업 포기, 자격 박탈)이 발생 시, 70점 이상인 기업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협약 진행 가능

라. 기타 사항: 선정된 기업은 협약식, 워크숍, 교육 등 각종 행사 필수 참석

마.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내용
창업자의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(전공, 경력, 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)
아이템의 기술성(구체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기업 제품(서비스) 개발의 주요방안 • 참여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 보유 여부
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쟁 제품 대비 경쟁력 및 유사 아이템과의 차별성 • 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 •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
계획의 성장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전 차년도 사업 수행과의 연계성 • 본 사업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의 타당성 • 사업 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•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(사업비) 사용 계획의 합리성
정착 및 이탈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표자·임직원의 정착 의지(이주 가능성) • 사업 종료 후 정착 계획 및 의지
지역연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천지역(금호읍) 활동 계획 및 연계성

V

사업운영 및 기업모니터링

□ **사업비 구성** : 사업비 구성은 '지원금'과 기업이 부담하는 '기업부담금(현금)'을 합한 금액으로 함(현물은 선택 사항)

※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(현금 필수) 이상으로 함

(예시) 지원금 10,000천원 + 기업부담금 1,000천원 = 사업비 11,000천원

□ **협약의 체결 및 지원금 지급**

- 1) **(협약 준비)** 수정사업계획서를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컨설팅을 통해 수정 및 보완 제출
- 2) **(협약 체결)** 수정사업계획서 내 의견사항 반영여부 확인 이후 협약 체결
- 3) **(사업비 지급)** 지원기업 민간부담금 현금납부 완료 이후 사업비 청구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비 지급 진행

□ **모니터링(진도점검)**

- 1)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기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간에 연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
- 2)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지원기업에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에 대한 면담 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3)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, 모니터링 시 불가피하게 기술·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- 4) 정기적인 모니터링 외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근무 계획에 맞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.

VI 사후관리

□ 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 협조

- 1) (결과물의 귀속)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(기업) 소유로 함.
- 2) (사후관리) 주관기관(기업)은 최종 평가 결과 통보연도부터 3년간 지원 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 및 자료를 관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, 관리기관에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3) (이전유지) 주관기관(기업)은 최초 협약 시 이전한 거주지 및 사업장을 최초협약일 기준 최소 3년간 유지(금호읍 내 이전은 가능)해야 하며, 관리기관에서 관련 자료(주소 및 사업장 증빙서류 등)제출 및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.

VII 참고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
- [사업비] 사업비 =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지원금 + 기업부담금(현금·현물)
 -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
 -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이상을 현금으로 계상, 현물은 비율 제한 없음
 -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기업 부담
 -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약기간 및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사업비유용, 협약위배, 자산취득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
- 그 외 선정 시 주관기관의 ‘의무사항’ 은 [별표 2] 참조

VIII

접수 및 문의처

가. 접수기간 : 2025. 11. 17.(월) ~ 2025. 11. 28.(금) 18:00 까지

나. 접수방법

접수처	홈페이지 접수(https://www.gbtp.or.kr)
문의처	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 ☎ 054-339-3353

다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
필수	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
	② (서식1) 지원사업 상세계획서(한컴오피스)
	(서식2)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	③ (서식3)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
	(서식4)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약약서
	④ 총사업자등록내역(홈텍스에서 대표자 명의 사실증명 발급) ※ '사업자등록증명원'과 다른 서류이며, 발급 시 필수 확인 요망
	⑤ 주소 이력이 확인 가능한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
	⑥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(기업)
	⑦ 사업자등록증 사본
	⑧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※ 1인 기업인 경우 제외
해당 시	⑨ 전년도 (2024년)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※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가능
	⑩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
	⑪ 공장등록증,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
	⑫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 등
	⑬ (서식5)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

[별표 1] 지원 제외 대상

<p>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</p> <p>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) 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<p>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</p> <p>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) 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<p>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p> <p>④ 의성군 안계면, 영덕군 영해면 등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청년, 기업, 단체 등 → 적발시 보조금 및 발생이자 전액 환수</p> <p>⑤ 중소기업부(舊 중기청)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*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혹은 중단 중인 자(기업)</p> <p>⑥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*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혹은 중단 중인 자(기업)</p> <p>*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확보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</p> <p>⑦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</p> <p>⑧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</p> <p>⑨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</p> <p>⑩ 기타 경상북도 도지사 또는 영천시 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</p> <p>⑪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「의견거절」또는 부적정(기업)</p> <p>⑫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(누락, 불성실작성 등) 신청자</p> <p>⑬ 협약에 필요한 선금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자(기업)</p>

□ 창업지원 제외 업종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
1	- 일반 유흥 주점업	56211
2	- 무도 유흥 주점업	56212
3	-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- 그 밖에 1~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[별표 2] 지원기업 의무사항

선정 후 협약 시 주관기관(지원기업)의 의무

- ①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의 규정 및 사업의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.
- ② '주관기관'은 1차년도 최초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상 '본점 소재지'와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'대표자·임직원의 주민등록 주소지'를 '경북 영천시 금호읍' 내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.
※ 업종과 무관하게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(임직원)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별도로 이전하여야 함.
※ 동일한 주소지에 타 지원기업과 사업장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음.(쉐어오피스 불가)
- ③ '주관기관'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3년간 휴·폐업, 본점·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음.
※ 단, 관리기관의 승인 후 '경북 영천시 금호읍' 지역 내 이전은 가능
※ '총괄기관'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사업을 통한 거주지 이전 시, 3년 6개월 간 필수 유지하여야 함.
- ④ '주관기관'은 지원받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,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.
- ⑤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(결과보고서 및 설문조사 등)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⑥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이 시행하는 현장실사, 불시점검, 중간점검, 평가위원회 등 각종 점검 및 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.
- ⑦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 또는 '관리기관이 지정한 자'의 관련 서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.
- ⑧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이 필수참석을 요청하며 제공하는 각종 교육, 멘토링,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및 행사에 필수 참석하여야 함.
- ⑨ '주관기관'은 3년 간의 '주소 유지기간' 동안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'근무 계획'을 준수하고, '관리기관'이 요청하는 '근무일지'를 양식에 맞추어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.
- ⑩ '주관기관'은 '총괄기관' 및 '관리기관'이 본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타 연계 지원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각종 공과금(월세, 임차료, 관리비 등), 제세금 납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.

※ '관리기관'은 '주관기관'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, '경고 조치'를 할 수 있으며, '경고 조치' 3회 이상 누적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.

※ 전문가를 대동한 불시점검으로 위장 전입, 공장 미가동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총괄기관의 권한으로 전국 광역·지자체에 임직원 명단공개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.

[별표 3] 사업비 계상 및 세부 지침

비목	세목	세세목	설명	비고	
직접 사업비	장비 · 재료비	시설·장비 운영비	사업운영 편의를 위한 사무실, 공장, 교육장, 기자재 임차, 시험 분석비 등 사업관련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비용 ※ 보증금 불가, 영천시 금호읍 지역에 한정, 임대차 계약서 체결 필수, 협약기간 내만 사용 가능		
		재료 구입비	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※ 사업종료 1개월 전부터 사용 지양		
		제품디자인비	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업그레이드시 적용되는 제품디자인비		
	활동비	도서인쇄비	원고료 : 개발 또는 사업관련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인쇄비 : 결과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인쇄비		
		홍보·마케팅비	신문광고, 브로셔, 리플렛 제작, 전시참가비 등		
		연구용역비	시제품제작 등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비용 ※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,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, 시제품 판매 불가		
		회계감사비	사업 회계정산 수수료 ※ 사업비 책정 필수		
		전문가 활용 및 정보수집비	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비(지원기업 관련기술, 인사, 노무, 재무분야 등) 국내외 훈련, 자료구입, 학회 참가비 등 ※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	총사업비 20% 이내	
	과제 추진비	국내 여비	사업 관련 국내 출장비용 ※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		직접비 10% 이내로 산정
		사무용품비 및 소모품비	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※ 사업종료 1개월 전부터 사용 지양		
회의비		사업관련 회의 다과비, 식대 ※ 외부기관(기업) 참석, 사진, 서명 必			
간접 사업비	간접비	연구지원비	연구실 안전관리비, 연구보안관리비, 연구윤리활동비	직접비 6% 이내	
		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	관련 학회 참가비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	